

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자:  원장소장

현장: 평가일시: 26. 05. 18

항목	법규 조항 평가 항목	실행부서	평가결과		비고
			Y	N	
환경안전보건법규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안전보건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		
	제16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N/A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	✓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안전보건	✓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안전보건	✓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안전보건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9조 ~131조 건강진단	안전보건	✓		
	제2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임무	안전보건	✓		
	제99조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안전보건	✓		
	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안전보건	✓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안전보건	✓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	✓		
	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안전보건	N/A		
	제19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안전보건	✓		
	제3조 진도의 방지	안전보건	✓		
	제8조 조도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작업발판	안전보건	✓		
	제16조 위험물등의 보관	안전보건	✓		
	제21조 통로의 조명	안전보건	✓		
	제239조 위험물등이 있는 장소의 회기등의 사용금지	안전보건	✓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		
	제33조 보호구의 관리법	안전보건	✓		
	제188조 포임이 끊어진 섬유프롬 등의 사용 금지	안전보건	N/A		
	제189조 섬유프롬 등의 점진	안전보건	N/A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	✓		
	제6조 종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	✓		

관리 방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폐쇄적인 작업환경의 조성, 근로조건 개선, 정보제공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자 선임 확인
 정기적인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 평가 및 조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교육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실시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에 관한 보화 및 지도·조인등
 근로조건의 개선유무(소음 발생 장소)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정기, 특별교육)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3년간 보존
 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보관(1년)
 사무적 근로자: 2년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1회 이상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정결상태로 유지
 초정밀차입: 750럭스(lux) 이상 정밀차입: 300럭스 이상 보통차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작업발판 설치, 기계, 설비 작업높이로 조절
 위험물등에 대해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
 75럭스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작업 금지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안전보호구의 착용여부 점검
 종량을 취급, 방진미스크 필터, 작업복 등 적절한 보호구 지급
 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이상 발견 섬유프롬 등을 즉시 교체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 함
 종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그 위반 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벌금 부과	전부서	✓
유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 이수(5점만점 이상의 과타로 부과)	전부서	✓
유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	전부서	✓
유	제9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부서	✓
유	제10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	양벌 적용	전부서	✓
유	제11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전부서	✓
유	제4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의 8개 항	전부서	✓
유	제5조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점검 의 4개 항	전부서	✓
유	1.법 제36조,시행령21조:보험금어의 종류와 선정 기준 등 2.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3.법 제40조: 요양급여	산업재해 조사포 유지 부적합 및 산재 발생 대장 보유	전부서	✓
유	1.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2.법 제23-24조: 해고등의 제한 3.법 제41조,시행령 제20조: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 4.법 50조:근로시간 5.법 53-56조:연장근로 및 연장근로 제한,휴일등	근로계약서 -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금지.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	전부서	✓
유	1.소화기 구비 및 배치 : 배치도 2.소방시설 작동가능점검 3.소방훈련(화재) 4.소방기구 점검(작동상태 소화기 점검기록 유지)	수시점검 1회/년 2회/년	전부서	✓
유	1.법 제12조,령 제6조,규칙 6조: 폐기물상(정의),분리수거 2. 제13조, 령 제7조, 규칙 제9조~11조 3.법 제60,61조	1. 폐기물의 처리기준 - 지정 폐기물 : 폐오일, 폐페인트(액상) - 사업장 일반폐기물 : 페놀타스틱, 페비닐,폐장갑,잡쓰레기 등 - 재활용 폐기물 : 폐전선,폐금속, 폐종이, 캔, 병 등(분리수거)	전부서	✓
무	1.제20조 제1항, 제2항 2.제22조 3.제24조 2항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용금조지,사고신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수집,운반,보관,처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신고)	전부서	✓